

1.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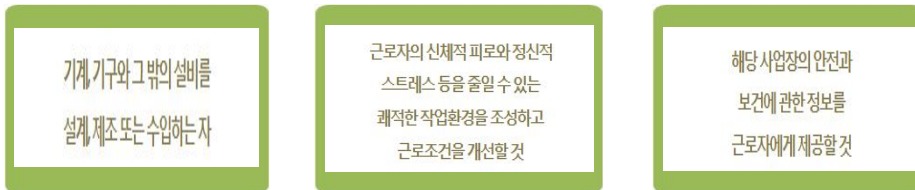
2. 산업안전보건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의무

가.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각 주체 즉,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1. 일반적 의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2. 설계·제조·수입·건설하는 자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위험성 평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04호)에 따라 2013. 1. 1.부터 위험성 평가사업 전면 시행.

10. 작업환경 측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직업성 질환을 초기 단계에서 찾아내어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건강진단 종류 : 배치전(업무배치전), 특수(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수시(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애 증상 호소자), 임시(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시 등), 일반(상시 근로자)



12.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3.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설치, 이전,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주에게 미리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하여 정부가 이를 심사, 확인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4. 안전보건 진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안전보건 진단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으로 전문성을 지닌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한 위험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5.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법 제49조의 2)

화재, 폭발, 위험물질 누출로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공정안전 관리 제도(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따라 공정안전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심사 및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 개선계획(법 제50조)

재해 다발 또는 작업환경 불량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근로자의 의무

1. 일반의무

근로자는 법과 법에 대한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일반적인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준수사항

사업주가 취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 또는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근로자는 도급인이 하는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호조치에 대한 근로자 준수사항

-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방호조치를 해제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고,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정부의 책무

근로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하여야 할 책무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防護裝置),
보호구(保護具) 등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 문화 추진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및 물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중대 재해 사례 ◆

제조업 중대재해사례

사고 발생 내용
이동대차와 외부구조물 사이에 끼임

사고 발생 원인
자동화 설비 정비·보수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

자동화의 딜레마 멈추지 않는 기계

오작동하는 이동대차와 외부구조물 사이에 작업자 끼임



기계는 인간의 명령이나 청해진 작업만을 따를 뿐, 돌발상황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지 않는다. 이는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오작동이 의심되어 점검·보수에 나서야 할 경우 반드시 기계·설비의 작동을 멈춘 뒤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한다. 작동을 멈출 수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기계보다 자동화 설비가 작업자에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66조의2

■ 주요 내용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①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검수·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해예방대책 법령정보 제공 : 최낙현 노무사(노무법인 로정, 02-561-2871)

몸살로 컨디션이 나쁜 야간근무자

중견 금속제련업체 A사의 생산설비운전·점검 4년 차인 박 씨. 최근 야간근무조로 옮겨와서 달라진 근무시간에 적응하지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다. “박 대리 괜찮아? 어디 많이 아픈 거 아냐?” 야간근무조에서 박 씨와 함께 항상 2인 1조로 작업하는 동료 문 씨가 그런 박 씨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을 건다. 기력이 없어 대답도 시원하게 못하는 박 씨를 말리며 문 씨가 다시 말했다. “오늘은 눈치껏 휴게실에서 좀 쉬고, 뭐 별일 없겠지.”

자동운전 이동대차. 정착위치가 계속 어긋나다

두 사람의 기대는 3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오후 10시, 중앙운전실에서 ‘이동대차’에 문제가 생겼다는 무전이 날아들었다. 금속제련에 사용되는 원석을 담은 대형 컨테이너를 호이스트의 권상위치까지 옮겨주는 ‘자동운전 이동대차’가 정해진 위치에 멈추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곧바로 현장으로 이동한 박 씨와 문 씨. 한참 벗어난 곳에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연한 오작동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현장조작 패널을 조작해 수동으로 이동대차를 정해진 위치에 있도록 조정한 후, 다시 자동운전 작업을 진행시켰다. 하지만, 이동대차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다.

운전 중인 이동대차 점검. 성공적이었을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오작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 씨와 문 씨가 다른 장소의 전기로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2인 1조 활동이 필수였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이동대차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랬다가는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라고 되려 질책을 받을 터였다. 결국 문 씨가 전기로를 다녀오기로 했다. 약 5분 뒤 홀로 남겨진 박 씨 곁으로 4번째 이동대차가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못 찾고 엉뚱한 곳에 멈췄다. 중앙운전실에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바로 ‘광전자식 센서를 점검해보라’는 무전이 도착했다. 이동대차가 정확한 장소에 멈춰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전자식 센서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점검·보수 시에는 이동대차의 자동운전 및 전원을 꺼야 했지만 박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동대차로 향했다.

몸살에 약기운까지 도는 터라 정신이 없었다. 박 씨가 이동대차에 올라타러 이동하는 길목에 다른 작업자가 몇몇 있었지만 **누구도 박 씨를 제지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 원칙대로라면 이동대차가동 중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다.**

잠시 후, 멈춰 있던 이동대차에 올라탄 박 씨는 오작동이 의심되던 광전자식 센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 씨가 이동대차에 올라타서 부품을 점검하는 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이동대차. 컨디션도 안 좋은데다 쭈그린 채로 부품을 점검하던 박 씨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이동대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나가는 구역을 보고 정신이 확 돌아온 박 씨, ‘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가이드레일 때문에 위험한데...’

다음 순간,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본 박 씨의 눈앞에 원석 컨테이너 권상을 돕는 가이드레일이 보였다. 지척이었다. 앞은 가이드레일, 뒤는 원석 컨테이너로 가로막힌 박 씨. 당황한 마음에 옆으로 뛰어내리지도 못한 채, 서서히 다가오는 가이드레일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



이 사고, 막을 수는 없었을까?

| 점검 시 전원을 차단했다더라면... |

위의 사례에서 사고를 일으킨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점검 및 정비·보수작업 시 설비의 운전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사업장은 이동대차 점검작업 시 이동대차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표지판 설치 및 가동용 열쇠의 별도 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이번 사고현장에서는 무엇 하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위험지역 내 출입문에 잠금조치가 안 됐으며, 점검 등의 작업에 1인 단독작업을 금해야 하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1)설비의 점검 및 정비·보수 시 운전을 정지시킨 후 가동장치를 별도 관리하고 점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위험지역 내 출입문을 잠그고, 3)이 출입문이 개방될 경우 자동설비의 운전이 정지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